

「종교인소득 과세제도」 설명회 신청 안내

2018.1.1.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회(교육)를 희망하는 종교단체는,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1. 교육 대상

- 설명회 개최를 희망하는 모든 종교단체(종교인)

2. 신청 방법

- 관할 세무서 홈페이지에 접속 ⇒ 공지사항 ⇒ 「종교인 과세 설명회 신청서」서식을 내려 받아 신청
 - 각 세무서별 설명회 담당자에게 전화·팩스 또는 E-mail로 신청
 - * 법인납세과 김현아조사관 ☎(041-559-8406), 팩스(0503-113-1940), E-mail(kha0912nts.go.kr)
 - 신청 기간 : 2017.12.11.(월) ~
 -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청 가능하며, 교육비는 무료입니다.

3. 설명회 진행 방식

- 방문 설명회 또는 세무서별 설명회 방식으로 진행
- 교단·종단 등 일정 규모(예시 100명) 이상의 경우
 - 희망하는 교육 일시·장소를 신청하면 해당 세무서가 신청한 단체와 협의하여, 방문 설명회 등 실시(대형 교단 등은 지방청에서 실시 가능)
-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설명회 신청 접수 후, 세무서별로 명단을 취합하여 서별 실정에 맞는 설명회 진행

4. 설명회 내용 등

- 내용 : 과세제도 안내 및 신고방법(홈택스 신고안내, 반기별 납부 등), 법령 개정(안) 등 설명
- 교재 : 법령 개정(안)이 반영된 리플릿, PPT 등 활용